

충청북도옥천전문대학설치조례(안)

검 토 보 고

기 획 경 제 위 원 회

전 문 위 원

충청북도 옥천전문대학 설치조례(안)

검 토 보 고

1. 제 출 처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'97. 4. 7

나. 회부일자 : '97. 4. 10

3. 제안이유

- 고등교육 희망자에 대한 교육기회 확대 및
-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중견 기술인력의 양성으로 산업인력 수요에 대처하고
활력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립 옥천전문대학 설치

4. 주요골자

- 옥천 전문대학은 충청북도 직속기관으로 함 (안제1조)
- 대학운영비는 학생등록금, 정부지원금, 도재정 등으로 총당 (안제1조)
- 대학의 학과, 학생정원, 학사는 학칙으로 정함 (안제4조)
- 대학에는 학장을 두며, 교무를 총괄하고 대학을 대표함 (안제5조)
- 대학에는 교수, 부교수, 조교수, 전임강사 및 조교를 둠 (안제6조)
- 대학의 운영, 관리는 도지사의 지휘 감독을 받음 (안제10조)

3. 검토의견

충청북도 도립 전문대학 설치조례안을 검토한 바 이는 국가와 지역산업 발전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론을 연구하고 재능을 연마하여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중견직업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직속기관으로 본 전문대학을 두고자 하는 것으로

주요골자를 보면

- 옥천전문대학을 충청북도 직속기관으로 하고 (안제1조)
- 대학운영비는 학생등록금, 정부지원금, 도재정 등으로 충당하며(안제3조)
- 대학의 학과, 학생정원, 학사는 학칙으로 정하고 (안제4조)
- 대학에는 교수, 부교수, 조교수, 전임강사 및 조교를 두며 (안제6조)
- 대학의 직제와 분장사무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하고 (안제9조)
- 대학의 운영, 관리는 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하였음 (안제10조)

그리고 안제2조중 "6필지"에 둔다로 필지수를 명문화할 경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학생이 증가하고 이에따라 교육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주변의 토지를 매입할 경우가 발생할 때 그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예상되는데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 본 조례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는 방향으로 면밀한 검토가 요망됨.

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립대학을 충청북도 직속기관으로 하고 대학운영비의 일부를 도재정 등으로 충당할 수 있게 하여 향후 옥천전문대학이 학생등록금과 정부지원금으로 운영이 가능할 때까지 도비지원의 부담감은 있으나 교육여건이 열악한 농촌지역 학생들에게도 고등교육기회를 확대시켜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산업 인력 수요에 대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사료됨.